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1
----------	-----

제출년월일 : 1996. . . .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 제안 이유

시·도에 설치하는 실·국·본부의 상한수를 규정한 대통령령 개정으로 우리 도에 1개 국 증설이 가능하고, 국장 정원도 승인되어, 업무량이 꾸준히 늘어나는 문화관광 분야의 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문화관광국을 설치하기 위함임.

□ 주요 골자

- 문화관광국을 신설하고, 다음 사무를 분장
 - 문화예술의 육성
 - 문화재, 천연기념물, 종교, 음반판매업소 관련 업무
 - 체육진흥 및 관련 시설의 관리
 - 관광의 진흥
 - 청소년 관련 업무
- 문화관광국 신설에 따라 현재의 내무국 및 공업경제국 분장사무 중 중복이 되는 다음 업무를 삭제
 - 내무국 - 문화예술 육성, 문화재 보존관리 및 체육진흥, 청소년 관련 업무
 - 공업경제국 - 관광의 진흥

□ 근거 법령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7조제1항

□ 따로 붙임

1.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참고 자료(근거 법령 내용) 1부. 끝.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안)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공업경제국" 다음에 "문화관광국"을 신설한다.

제6조 중 제10호 "문화예술 육성, 문화재 보존관리 및 체육진흥, 청소년 관련 업무"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호"를 "제10호"로 한다.

제10조 중 "4. 관광의 진흥"을 삭제한다.

"제11조 내지 제14조"를 "제12조 내지 제15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 (문화관광국) 문화관광국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문화예술의 육성
2. 문화재, 천연기념물, 종교, 음반판매업소 관련 업무
3. 체육진흥 및 관련 시설의 관리
4. 관광의 진흥
5. 청소년 관련 업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